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1966

제안연월일 : 2002. 11.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 스포츠 대제전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됨.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2년 8월 28일 IOC로부터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음.

특히,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통일의 직·간접적인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어 IOC가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